

#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8월 5일
- 나. 제출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4일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제안설명
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(제1차) : 총무국장 정은면
- 기획총무위원회 : 총무과장 박병욱

### 나. 제안이유

- '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이 지난 2002. 7. 31자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초과인원 13명에 대하여는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령이 2002. 6. 10자로 공포·시행됨에 따라
- 2003. 2. 28까지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다는 경과 조치 조항을 신설하라는 정·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.

#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1966호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「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

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」라고 신설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(2002. 9. 4)
 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회의(2002. 9. 5)
  - 안건검토 및 심사

### 5. 토론요지

- 19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 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초과인원 13명에 대한 정리가 단기간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초과 인원을 내년 2003년 2월 28일 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되므로 「원안가결」 하였음.

### 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